

제2703호
2020. 1. 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규 칙]

제714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자 치 법 규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14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5조제20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세외수입(총괄) 및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8조 중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을 “지방의무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9조제10호 중 “금연운동 등”을 “구민건강 종합계획 등 보건 정책 수립”으로 한다.

제40조제7호 중 “금연사업 등”을 “노인보건·치매”로 한다.

제41조제4호 중 “노인보건·치매”를 “금연사업 등”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9조(공원녹지과) ----- -. 1. ~ 8. (현행과 같음) <u>9.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제20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u>8.·9.</u> (생 략) <u>10.</u> (생 략)	제20조(건축과) -----. 1. ~ 6. (현행과 같음) <u>7.·8.</u>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u>9.</u>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25조(도심산업과) 도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 략) <u>20.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21. ~ 24. (생 략)	제25조(도심산업과) ----- --. 1. ~ 19. (현행과 같음) <u><삭 제></u> 21. ~ 24. (현행과 같음)
제29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세무1과) -----.

현 행	개 정 안
<p>1. · 2. (생 략)</p> <p>3. <u>현·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u></p> <p>4. ~ 6. (생 략)</p> <p><신 설></p> <p>제30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세외수입(총괄) 및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u></p> <p>4. ~ 6. (현행과 같음)</p> <p>7. <u>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u></p> <p>제30조(세무2과) -----.</p>
<p>1. (생 략)</p> <p>2. <u>세외수입(총괄) 및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u></p> <p>3. · 4. (생 략)</p> <p>제38조(보건소) 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보건위생과장·시민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u>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u>으로 보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38조(보건소) ----- ----- ----- ----- ----- ----- <u>지방의무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u> <u>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u>-----.</p>
<p>제39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 략)</p> <p>10. <u>금연운동 등에 관한 사항</u></p> <p>11. (생 략)</p>	<p>제39조(보건위생과)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구민건강 종합계획 등 보건 정책 수립</u>----- -----</p> <p>11. (현행과 같음)</p>
<p>제40조(시민건강과) 시민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6. (생 략)</p> <p>7. <u>금연사업 등에 관한 사항</u></p>	<p>제40조(시민건강과)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노인보건·치매</u>-----</p>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노인보건·치매에 관한 사항 5. ~ 16. (생 략)	제41조(건강관리과) ----- --. 1. ~ 3. (현행과 같음) 4. 금연사업 등----- 5. ~ 16. (현행과 같음)
제43조(동장의 직급) ① (생 략) ② 동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4. (생 략)	제43조(동장의 직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4. (현행과 같음)
<신 설>	45.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부서 간 업무 이관 및 의약과장 직위에 대한 개방형직위 지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무업무 이관(제29조, 제30조)
 -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 세무1과→세무2과
 - 세외수입(총괄) 및 체납 징수사항 : 세무2과→세무1과
- 의약과장 개방형직위 지정(제38조)
- 보건소 내 업무이관(제39~41조)
 - 보건위생과 : 보건정책수립 업무 신설
 - 금연사업 : 시민건강과→건강관리과
 - 노인 보건·치매 : 건강관리과→시민건강과
- 기타 업무 이관 : 생활안전담당관-동주민센터, 도심산업과↔공원녹지과 간(제9조, 제25조, 제43조)
 -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권한 등 부여(생활안전담당관 총괄 권한 유지)
 -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심산업과→공원녹지과